

인지세 납부안내

※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계약 진행 시 필히 “전자수입인지”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
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”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	※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※ 계약서 발행 건당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 (분양대금+프리미엄)	

■ 세액

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

■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부과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, '21.1.1부터 적용)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

구입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.e-revenuestamp.or.kr	우체국
구입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종이문서용 “전자수입인지” 클릭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결제 출력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근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- 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 결제(현금) 발급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※ 계약서 발급 당일 이외 (계약 전일, 계약 익일) 인지세 납부는 미납으로 간주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※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 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